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이 영 주(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일 시 | 2023년 2월 21일 (화) 16:00

| 장 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본청 446호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안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 영 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

소방청 119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ontents 보고순서

- 1 배경 및 필요성
- 2 제정이유
- 3 구성 및 내용
- 4 법률안 관련 영향검토
- 5 기대효과





1-1 배경 및 필요성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01 긴급민원신고 13종 119로 통합(2010년)

- 수도, 가스, 전기, 성폭력, 청소년폭력, 자살
- 노인, 아동학대, 관광통역안내 등 14개 긴급 민원
- 긴급신고 119, 비긴급신고 관련기관으로 이첩

긴급 민원
신고 통합

02 모든 재난 신고를 119로 통합 운영(2016년)

- 세월호 사건(2014. 4.) 계기로 긴급신고 통합 필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로 긴급신고 일원화
- 비긴급 신고를 위한 110 번호 별도 운영

긴급
신고번호
통합

03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2020.04)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통합적 재난대응 필요
- 중앙 조직개편으로 소방통신계 설치 등 조직 개선

소방
국가직
전환

04 대형사고, 재난에서의 119 신고 체계의 중요성

-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 대형 재난, 사고 등에서 119신고, 119신고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및 사회적 관심 급증
- 119 신고 급증으로 인한 효율화, 체계화 필요

효율화,
체계화된
119
신고체계
필요

모든 재난 신고 119 일원화, 재난 관련기관 협력, 119정보기술 융합·연계 등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1-2 배경 및 필요성

현행 119긴급신고 관련 법률 미비

01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03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련기관 협력, 공동대응 등 근거 필요



1-3 배경 및 필요성

최근 3년 119긴급신고 처리 현황

■ 전국 소방본부에서 총 745대 (119접수: 317, 응급의료: 78, 보조: 350)의 119접수대를 운영하고, 비상용을 제외하면 395대의 접수대로 연평균 약 1,100만 건의 119신고를 처리하고 있음

연도별	합계	출동 관련 신고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응답	오접속	기타	
		소계	화재	구조	구급	기타							
17년	계	11,550,786	4,268,749	323,515	605,446	2,667,533	672,255	129,704	3,307,760	1,477	1,898,771	945,415	998,910
	유선	2,329,542	938,207	48,962	100,046	432,855	356,344	11,757	544,691	657	346,381	180,277	307,572
	무선	9,221,244	3,330,542	274,553	505,400	2,234,678	315,911	117,947	2,763,069	820	1,552,390	765,138	691,338
18년	계	11,384,521	4,322,202	335,545	589,495	2,725,286	671,876	130,636	3,336,411	753	1,748,186	873,048	973,285
	유선	2,148,395	874,942	60,605	88,603	370,942	354,792	11,040	558,361	272	274,893	146,962	281,925
	무선	9,236,126	3,447,260	274,940	500,892	2,354,344	317,084	119,596	2,778,050	481	1,473,293	726,086	691,360
19년	계	11,567,173	4,375,325	340,757	635,996	2,684,775	713,797	104,990	3,328,167	407	2,000,756	891,734	865,794
	유선	1,985,084	843,624	66,167	91,802	312,193	373,462	7,670	553,096	103	226,090	117,762	236,739
	무선	9,582,089	3,531,701	274,590	544,194	2,372,582	340,335	97,320	2,775,071	304	1,774,666	773,972	629,055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현재 문제점(AS-IS)



- 119긴급신고 공유 및 협력체계 미흡
- 긴급신고 정보공유는 일부기관 한정
-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도 미흡
- 긴급신고 폭주시 대응의 한계 발생

➤ 119긴급신고 처리 지연 우려 상존



개선방향(TO-BE)



- 기관간 정보공유, 공동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로 침해 최소화
- 119긴급신고의 업무연속성 확보
- 긴급신고 편리성 및 다양성 개선

➤ 신속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119긴급신고법 주요 내용

운영개선
정책환류

중·장기 계획수립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 119긴급신고 정책심의회 운영
119긴급신고 접수 및 공유 체계 구성	국내·해외 119신고접수, 119접수센터 운영(신고 공유·이관, 출동), 재난관련 공동대응, 유형별 표준운영절차,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119정보통신시스템 시스템 구축·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위치정보·영상) 관리, 공동대응·협력, 119관련 지원정보 연계, 소방통신망 구축·운영 등
정보통신 보안관리	119정보통신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등
통계·정보 분석체계 구축·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119긴급신고 유형별 처리 절차, 시스템 연계 운영 등 119긴급신고 체계 운영 및 취약점 분석



3-2 구성 및 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구성

구분	조문구성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119긴급신고의 총괄·조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제7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8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	119긴급신고 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	119긴급신고 접수 등
제3장 119긴급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해외에서의 119긴급신고
	제12조	119접수센터 등 설치·운영 등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제14조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5조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6조	119영상 촬영·관리 등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구분	조문구성	
<p>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등</p>	제17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제18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9조	소방통신망 구축
	제20조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21조	정보통신 보안관리
	제22조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23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p>제5장 보칙</p>	제24조	예산의 확보 지원 등
	제25조	통계·정보 분석 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26조	사전협의
	제27조	교육·훈련
<p>제6장 벌칙</p>	제28조	대국민 홍보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4-1 법률 영향검토

119긴급신고법과 타 법률과 영향 검토

119긴급신고법 제13조2항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19긴급신고법 제13조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긴급신고법 제16조3항

소방청장 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긴급구조 및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현장활동 및 대응에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29조8항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 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법률 관련 조문과의 상호보완적 운영체계 마련



4-2 법률 영향검토

119긴급신고법이 관련기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119(비상)접수센터 등 기반시설 마련 (제3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관련자료 제출 (제7조)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의무 (제14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제7조)	해외의 긴급신고 접수에 대한 협력 (제11조)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 (제21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8조)	119긴급신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활용 협력 (제13조)	국민
긴급신고 신기술 도입 사전협의 (제26조)	119긴급신고 신기술 도입 사전협의 (제26조)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용 (제13조, 제16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